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6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 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2014년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이 제정되어 실시된 이후, 2021년, 2022년 5차례에 걸쳐 개정된바,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,
-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문화, 문화예술, 문화도시, 문화지구,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15조)
-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)
-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·군, 지역문화 관련 기관·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-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충북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며,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, 문화예술, 문화도시, 문화지구, 지역문화 전문인력 등 법령에서 정의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 및 시책 추진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 조례의 우선적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는 5년 단위의 「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」 수립·시행·평가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,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열거하고,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.
-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
- 안 제16조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.
- 안 제17조에서는 시군 및 문화 관련 기관·단체,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.

- 안 제18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문화 기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도내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, 고유 문화 콘텐츠의 육성,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,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중심의 문화역량 강화, 시·군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.
- 특히 도지사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, 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행정적 책임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,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·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발전 기반 또한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.
-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을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, 자발적 문화생태계 조성, 문화권 보장 등 지역문화 정책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를 통해 충청북도 고유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며, 문화예술을 포함한 관광, 교육, 복지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제정의 타당성에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문화”란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.
3. “문화도시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.
4. “문화지구”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.
5. “지역문화전문인력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·시행·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4.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
5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
2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·보급
3.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
4.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
5.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관련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
2.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해당 안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

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)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
2.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

제1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·군, 지역문화 관련 기관·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,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8조(포상)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략) 3. “어문규범”이란 「국어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, 외래어 표기법,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 을 말한다. 4. (생략) 5. “공문서 등”이란 공공기관에 게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, 공보, 책자, 이름, 표지판, 시청각 자료, 누리집 (인터넷 홈페이지) 정보 등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「국어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- ----- 한글 맞 춤법----- 표준 발음 법, 외래어 ----- ----- -----. 4. (현행과 같음) 5. “공문서 등”이란 공공기관에 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 는 문서(도면 · 사진 · 디스크 · 테이프 · 필름 · 슬라이드 · 전자문서 · 현수막 · 안내판 등 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제6조(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 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.	제6조(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3. (생략)

4. 「국어기본법」 제24조에 따라
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
는 사람

5. · 6. (생략)

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

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「국
어기본법」 제14조와 「국어기본
법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어문
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
야 한다. 다만, 의미 파악이 어
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
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
있다.

② (생략)

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
무) ① (생략)

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도민
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
추진

5. (생략)

6. 그 밖에 영 제3조에 따른 임
무와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24조-----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

① -----
법 제14조와 「국어기본법 시행
령」 제11조-----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
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소속 공무원 또는 --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도지사-----

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정한 사항 ③・④ (생략) 제23조(포상) ① 도지사는 <u>제15조</u> <u>의 광고물 한글 표기와 제13조</u> <u>와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</u> <u>용과 관련되거나 국어</u>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 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. ③ (생략)	----- -----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제23조(포상) ① ----- <u>국어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